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명령의 신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근거 신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규정 신설, 사전 실태점검 근거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삭제 등을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신설·정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마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정책국에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대상 아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도 등”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부처간 협조,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의3.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의4.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 지정에 관한 사항

5의5.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운영

5의7. 국외 이전 관련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시책 마련

제6조제2항 중 “데이터안전정책과 및 자율보호정책과를”을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을 “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각각 “신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신유형”을 각각 “새로운 유형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제8호의4부터 제8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의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제8호의5(중전의 제8호의3) 및 제8호의6(중전의 제8호의4)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각각 “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8호 중 “평가·관리”를 “평가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 수립·총괄 및 조정
2. 인공지능 개인정보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연구
3.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4.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민·관 협의회 운영
5.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법령해석
6.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7.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제도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 중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실태점검·침해조사”를 “실태점검(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침해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실태점검”을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실태점검”을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7조제5항제1호 중 “(공공기관은)”을 “(공공기관, 정보통신분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 중 “제4호의2”를 각각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정보통신 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태점검”을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온라인 플랫폼 분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한다)”를 “(국내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

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5”를 “5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은 2026년 10월 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u>13.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u>	<u><삭 제></u>
<u>14.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u>	<u><삭 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u>제도 등</u> 에 관한 사항	5. ----- <u>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u> ----- -----
<u><신 설></u>	<u>5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부처간 협조,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5의3.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6. ~ 12. (생 략)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생 략)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및 자율보호 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u>보</u>한다.	<u>영</u> 5의4.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 지정에 관한 사항 5의5.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운영 5의7. 국외 이전 관련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시책 마련 6. ~ 12. (현행과 같음)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u> ③ ----- ----- <u>보</u>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

④ (생략)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생략)

3.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혁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의2.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의3. ~ 5. (생략)

6.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영상정보, 생체인식정보, 행태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으로 보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신기술 -----

2. (현행과 같음)

3. 신기술 -----

3의2. 신기술 -----

3의3. ~ 5. (현행과 같음)

6. -----
----- 새로운 유형의 -----

7. -----
----- 새로운 유형의 -----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신 설>

<신 설>

8의2. · 8의3. (생 략)

8의3.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
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

8의4.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
기술 및 융복합 산업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 사
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9. · 10. (생 략)

⑥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신 설>

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8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8의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에 관한 사항

8의4. · 8의5. (현행 제8호의2 및
제8호의3과 같음)

8의5. 신기술 -----

8의6. 신기술 -----
--

9. · 10. (현행과 같음)

⑥ -----
-----.

1. ~ 14. (현행과 같음)

15.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⑦ -----
-----.

1. ~ 7. (현행과 같음)

8. -----

처리방침 평가·관리

9. ~ 26. (생략)

<신설>

제7조(조사조정국) ①·② (생략)

----- 평가 및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9. ~ 26. (현행과 같음)

⑧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
책 수립·총괄 및 조정

2. 인공지능 개인정보 관련 제
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연구

3.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가
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4.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민
·관 협의회 운영

5.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법
령해석

6.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개
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7.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국
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에 관
한 사항

8. 국내·외 인공지능 개인정보
분야 정책·제도의 연구·조
사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조정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관련 업무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업무의 총괄

2. ~ 4. (생략)

5.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6. ~ 8. (생략)

9.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점검 총괄

10. ~ 20. (생략)

<신설>

21. (생략)

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은

③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
--.

④ -----
-----.

1. ----- 실태점검(사전 실태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침해조사-----

2. ~ 4. (현행과 같음)

5. -----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

6. ~ 8. (현행과 같음)

9. -----
-- 실태조사 --

10. ~ 20. (현행과 같음)

21. 사건처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⑤ -----
-----.

1. -----(공공기관, 정

제외한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 ~ 4. (생략)

4의2.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동
통신 등 통신분야에 대한 개
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
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4의3. · 4의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
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계·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
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사
항(이하 이 항에서 “소관사항”
이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정
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
호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

7.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
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

보통신분야는 -----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4의3. · 4의4. (현행과 같음)

5. ----- 제4
호의3-----

6. ----- 제4
호의3-----

7. · 8. (현행과 같음)

9. ----- 제4
호의3-----

원회 심의·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
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정조치·개선권고·고발 등
행정조치

11.·12. (생략)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
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
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이
동통신 등 통신 분야와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
다)

2. (생략)

3. 삭제

4.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
한 보호 실태점검에 관한 사
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는 제외한다)

5.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

10. ----- 제4
호의3-----

11.·12. (현행과 같음)

⑥ -----
-----.

1. 정보통신 분야-----

2. (현행과 같음)

4. -----
-----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삭제>

<u>한 침해조사에 관한 사항(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제외한다)</u> 6. ~ 15. (생략) ⑦·⑧ (생략) ⑨ 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계획의 수립·실시(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한다)</u> 2. ~ 11. (생략)	6. ~ 15.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 1. <u>온라인 플랫폼 분야</u>----- ----- ----- ----- -----<u>(국내에 한정한다)</u> 2. ~ 11.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회복지사무 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 • <u>55</u> • •	• • <u>56</u> • •	 +1